

# 大學評價制度의 定着化 課題

魚允培  
(崇實大 社會事業學科)

## 1. 序言

1982년 4월의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이하 英文略字인 KCUE로 표시함)創設과 더불어 大學의 評價는 制度로서 定着되어 가고 있다. 1984년의 韓國大學教育協議會法 第18條 ①項에서 대학의 評價事業은 KCUE(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의 약자)의 義務事業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大學教育과 大學行政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料를 확보하고 週期的으로 대학의 學事 및 運營全般에 관한 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明文化되어 있으며, 同條 ②項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결과는 지체없이 文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事業目的을 위하여 KCUE는 회원 대학간의 ‘自律的인 協議와 研究·調整을 통하여相互協力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建議, 정책에 反映케 함으로써 대학의 自主性을 재고하고 公共性을 양양하여 大學教育의健全한 發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음을 KCUE의 定款 第1條에서 밝히고 있다.

오늘날, KCUE에 의한 大學評價事業의 목적은 그 定款에서 명시한 대로 ‘대학의 自主性 提高와 公共性 昂揚’에 기여하는 데 있고 대학 평가사업은 대학간의 ‘自律的인 協議와 研究調整’의 方法으로 추진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KCUE는 이상과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설립 아래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大學評價事業을 하나의 제도로서 定着시켜야 할 시급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KCUE의 한 研究報告書에서 지적하고 있다.<sup>1)</sup> KCUE의 概念이나 組織과 業務 자체도 새롭고 어느 면에서는 未定着인 狀態下에서 이제까지 官主導로 실시해 오던 대학의 평가사업을 대학간의 自律的 協議機構의 성격을 떤 KCUE에 의하여 그것도 大學間에 ‘自律的인 協議와 研究調整’의 방법으로 짧은 기간내에 制度化시킨다는 것은 難題가 아닐 수 없다. ‘시작이 半’이라는 격언이 있다. 착수하고자 하는 평가 사업의 개념이 明瞭하고 會員校間에 충분히 그 취지와 목적 및 접근 방법에 대해 意思疏通이 되었고 그 결과가 KCUE와 對象校에 還流(feedback)되어 당초의 목적과 目標達成에統合될 수 있는 裝置(mechanism)가 잘 짜여져 있다면, 대학 평가 사업을 제도로서 정착시키고자 하

1) 李星鶴·具丙林, 大學評價事業의 制度的 發展方向 研究, 韓國大學教育協議會 研究報告 第 85-1-32(1985. 8), p. 8.

는 KCUE의 努力은 이미 半程度는 達成되었다고 假定해 볼 수 있다. 반면 不分明한 概念, 不充分한 意思疏通, 結果의 受容裝置 未備 등의 상태에서 대학 평가 사업을 出帆시켰다면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할수록 대학 평가 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大學의 自主性 제고와 公共性 강화’ 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本稿에서는 KCUE 创設 이래 실시한 大學評價事業의 각종 報告書와 研究論文 등에서 지적한 問題點들과 제시한 對策 등을 중심으로 대학 평가 사업의 制度的 定着方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미 상당량의 報告書와 研究論文들이 이 분야의 專門學者들에 의하여 발표되었고 대학 평가 사업의 制度的 定着을 위한 방법 등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그러한 見解들을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정착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大學評價制度化의 先行要件

制度의 定着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를 의미한다. 제도화란 제도의 擴散과 受容化를 말한다.

어느 제도든 그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個人이나 集團이 그 제도의趣旨나 目的에 그들의 行動目標를 順應시키고 承服해야만 한다. 환연하면 그 제도가 개인이나 집단의 순응과 승복의動機를 誘發해야만 한다. 心理的 次元에서 볼 때 개인이나 집단이 그러한 제도내에서 혹은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기들의目標追求를 최소한 滿足시킬 수 있을 때 또는 그러한可能性을 예측할 수 있을 때 그 제도를 受容하게 된다. 그 제도의 恩澤이 可視的·直接的·現時의 일수록 그 제도의 확산과 정착은 加速化된다는 사실은 많은 實證의 연구

에 의하여 立證되고 있다.<sup>2)</sup>

때문에 大學評價事業이 제도로서 정착되는 것은 대학 평가의 目的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그러한 평가 사업이 KCUE와 같은 機構에 의하여 추진될 때에는 그러한 問題는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다. 美國의 경우에서와 같이 대학들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自發的인 合意에 의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自律的 大學業績評定制度( accreditation system)를 발전시켰을 때에는 평가 자체를 그들 자신의 目的追求로 受容하기 때문에 쉽게 정착이 될 수 있다.<sup>3)</sup>

英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1919년에 法定機關으로 설립된 大學補助金委員會(UGC: University Grants Committee)에서 대학의 學事, 教授, 圖書館, 運營 등에 대해 全般的인 調查와 評價를 실시한다. 그러한 조사와 평가의 목적은 政府에서 대학에 補助金을 지급해 주는데 필요한 資料를 얻는 데 있다. 1985~86년 英國 대학들의 收入金 83%는 정부로부터 交付되고 있으며 UGC가 執行하고 있다.<sup>4)</sup> 즉 大學評價의 目적이 뚜렷하다.

이처럼 先進國에서 정착시킨 大學評價制度가 大學教育의 質의 水準의 유지와 개선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제도를 導入해야겠다는 취지와 목적으로 KCUE가 設立되었고, 또 大學評價事業이 推進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先行條件의 充足이 필요하다.

즉, KCUE의 會員校들이 KCUE를 자기 대학 평가를 위한 自律的 機構로 만드는 일이다. 비록 KCUE가 英國의 UGC와 같은 法定 기관으로서 정부의 補助金 支給의 行政 책임을 法的 權限으로 부여받고 있기는 않지만 그에 準하는 혹은 그러한 단계의 前段階로서 KCUE의 位置와 役割을 회원교들의 自主的인 努力으로 구축하는 일이다.

2) Jack Rothman et al, *Promoting Innovation and Change in Organization and Communities*(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6)에서 인용한 각종 문헌을 참고로 할 것.

3) 1986년 10월 22일 KCUE 주최로 개최된 “Problems and Prospects of University Education Evaluation” 세미나에서 발표한 Richard M. Millard(美國高等教育評定協議會 會長)氏의 논문, “The American Accrediting System”을 볼 것.

4) 앞에서 언급한 KCUE 세미나에서 발표한 David Harrison(Exeter大學校 副總長)氏의 논문, “University Evaluation in Great Britain,”을 볼 것.

이러한 회원교들의 자주적인 노력을促進시키기 위해서 KCUE는 대학 평가 사업의 목적과 방법 내지 절차를 명료하게定立해야 한다. 즉 평가 사업의定着化戰略과細部施策을實效性 있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각종 보고서와 연구 논문들에서 지적한問題들과 제시한對策들을再照明해 보고자 한다.

### 3. 大學評價의 目的 問題

이미 언급한 대로 대학 평가 사업이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大學評價의目的이 무엇보다 명료히規定되고 대학으로 하여금 평가의惠澤을豫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急先務다. 그러나 아직 KCUE의 평가 사업이 그런段階에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KCUE의 평가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어느教授의 말과 같은“大學評價는 해서 무엇하는가?”<sup>5)</sup>라는 질문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아니라 평가를 받는對象校의 입장에서 제기할 때, KCUE의 입장이分明치 못한 것 같다.<sup>6)</sup> 이 질문에 대한解答을 위한會員校相互間의自律的協議와研究 및調整의과정이 바로 대학 평가 사업을 정착화시키는基礎가 된다.

비록 KCUE의 대학 평가 사업이 회원교와共同으로 수행되되, 그 목적이文教部의學事行政에 관련된政策資料의수집이나정보를제공하는 테불과할지언정<sup>7)</sup> KCUE設置法에 의하여‘週期的으로大學의學事및運營全般에관한評價’(同法第18條②項)를 KCUE에委任한 이상그法의根據에따라 KCUE의 대학 평가 사업을회원교의自體發展과대학상호간의協力增大的媒體로발전시킬수있는 가능성은얼마든지있다고본다.

우선 대학 평가 사업이實效를거두기 위해서는 평가의對象範圍를縮小하여 그 평가의結果

를 평가 대상교들이 자체 노력으로受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 해당교의全般的인學事改革이나방대한資金을 소요하는施設擴充을 필요로 한다면 그 평가는 아무리客觀的인立場에서科學的方法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KCUE의 평가가財政支援과연결될수있다면 KCUE의 평가 사업은즉각적으로큰呼應을불러일으킬것이며각종평가사업은大學教育의水準向上에기여할것임에틀림없다.<sup>8)</sup> 그러한目標에로 KCUE의 평가 사업을발전시켜나가는것이 KCUE의 궁극적인組織目標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을현시점에서 KCUE에法的으로부여했다고假定했을때과연 KCUE의 평가 결과에회원교들이承服하고 그것을受容할수있겠는가라는質問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 평가의 결과로財政的支援에서不利한評定을받게되었을때나本意아니게大學間의等級化가이루어져그序列의뒤바뀜이일어날때야기되는混亂등은수없이많을것으로예측된다. 오히려大學의평가사업이대학간의不協和音을야기시킬수도있다.

반면, 대학 평가의 결과가 해당대학의脆弱한부문을改善하고強點을補強해주는支援의根據로활용된다면대학들이自願해서KCUE에평가를요청하는경우도예견할수있다.

이상의 어느 경우든지 평가는 해당교의 利害와직결된다. 財政支援과같은外部的報償可能성을배제한여타의분야에서대학평가사업이회원교에惠澤을줄수있는분야를KCUE를center으로회원교들이地域別로, 專門學問分野別로, 혹은大學運營의측면에서相互協議下에모색하면自律的으로평가사업을계획하고, 평가하는領域을찾아낼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그러한共通分母위에서평가하고자하는對象의範圍와평가의基準을상호협의하에설정

5) KCUE, 大學評價의發展方向摸索을위한세미나, 評價制度의問題點과改善方向, p.40.

6) 李星鶴, 具丙林, 前揭書, p.31.

7) 康宇哲, 前揭書, p.38.

8) KCUE에서개최한前記세미나에서발표한李寬(蔚山大總長)의論文“University Evaluation System in Korea,” p.22.

해 간다면 그 部門에 관한 한 평가의 결과에 의한 自律的調整이나 規制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1985년부터는 ‘과거의 機關評價中心體制에서 점진적으로 學科別評價體制로 전환하도록 集中的인 研究’<sup>9)</sup>를 KCUE가 추진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평가의 대상을 學科別로 縮小하고 평가 내용을 학과별 교수·학습 활동, 연구 활동, 실습,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 교재, 학습 평가 도구의 有用性 등으로 결정하고 평가의 기준을 국내의 學界의 動向과 先進外國의 同種學科에서의 實例를 기초로 해서 설정하고 평가는 타대학의 同僚教授, 그 분야의 專門家, KCUE의 專門委員 등으로 구성된 評價協議會에서 실시한다면 현재와 같은 ‘全面改革構想을 통한 劍一的’인 大學評價事業보다는 훨씬 더 대학 평가 사업의 本來意味를 살리고 각 대학의 ‘自律的인 自發的參與’<sup>10)</sup>를 촉진시킬 契機를 마련해 주지 않겠나 생각된다.

학과별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地域別로 혹은 設立背景이나 規模 등의 類似性 등을 감안하여 小規模의 評價協議會를 구성해 한다면 전국적인 학과별 평가보다 더 ‘自律的인 自發的參與’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중에서 평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相互補完補強하면서 專攻分野의 학문적 발전과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水準向上을 도모함으로써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평가의 대상이나 내용을 制限된範圍에서 출발하여 차츰 인접 학문 분야나 大學運營의 측면에 漸進的으로 擴大해 가는 접근 방법을 택한다면 KCUE에서 주관하는 機關別綜合評價에도 대학의 自發的參與의 정도가 強化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下位協議機構들에 의한 대학 평가 사업이 약 5년 정도에 걸쳐 시도

적으로 시행된 다음에는 현행처럼 全體大學 모두에 대하여 거의 義務的으로 실시되는 듯한 구속적 평가에서 탈피하고 評價事業을 評價 및 認定事業으로 전환시킴이 좋을 것이다’<sup>11)</sup>라는 提議는 매우 타당하다.

대학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大學敎育의 質的水準의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目標를 제시해주는 데 있기 때문에<sup>12)</sup> 대학교육의 어느 한 部門에서라도 평가의 결과에 따라 現狀水準을 유지하든지 혹은 改善을 하는 데 自律的인 努力を 하게 된다면 그 波及效果는 결코 적지 않다고 본다.

KCUE와 같이 法定機關이면서 평가의 결과를 強制로 受容시킬 수 있는 權限이 없는 機構에 의하여 평가 사업을 정착시키고자 하면, 이상과 같이 部分的으로 시행하면서 參加校들이 그 결과를 自發的으로 受容해 가는 接近方法이 평가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매우 適實하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대학 평가가 限定된 分野에서 具體的인 目標를 가지고 실시되지 않고, 시행될 수 없는 全面的改革을 전제로 한 機關別綜合評價를 KCUE의 회원교전체에게 一律的으로 제한된 시일내에 실시했기 때문에 KCUE에 의한 大學評價事業이 制度로서 정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즉, 평가의 목적이 대학의 學事行政이나 大學運營 全般에 걸쳐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평가의結果를 당해 대학에서 受容할 수 없을 뿐더러 타대학에도 波及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언급한 대로 막대한 財政投入 없이는 不可能한 전면적 개혁을 목표로 하는 평가사업은 實效性이 없다. 때문에 KCUE의 평가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會員校相互間 큰 부담없이 평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평가의 對象이나 目標를 限定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 사업을 實效性 있게 추진하고 회원교간에 定着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의 方法이나 節

9) KCUE, 1986年度大學評價計劃書(1986.2), 머리말.

10) 李星鎬·具丙林, 前揭書, pp. 32~33.

11) 上揭書, pp. 35~36.

12) 劉仁鍾, “大學榮績評定制度의 國際的 動向과 韓國 大學評價制度의 方向”, KCUE, 資料 84-5-13(1984.12.18), p. 4.

次の 문제도 再考를 要한다.

#### 4. 評價事業 推進의 方法 問題

KCUE의 定款에서 명시하듯 평가 사업의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실시에 있어서도 회원교간의 ‘自律的인 協議와 研究 調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CUE의 設置法規定에 따라 KUCE는 週期의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걸쳐 評價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文教部長官에게 報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사업을 해야만 한다면 評價制度의 自律的 定着은 기대하기 어렵다. KCUE 자체를 자율적인 協議機構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定着(institutionalization)시키고자 한다면 KCUE의 主力事業의 하나인 대학 평가 사업의 推進方法은 정관에서 명시한 대로 대학간의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 및 조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현재까지 KCUE에 의한 평가 사업은 自體分析研究形式의 書面報告에 의거한 평가와 現地訪問評價의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문제는 평가의 목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KCUE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면 보고와 현지 방문의 實效性 與否에 있다. 評價方法의 형식이나 절차는 평가 자체의 목적 뜻지 않게 評價制度의 定着化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가의 目標設定過程에 있어서 회원교들의 自律的・自發的參與가 중요하듯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자발적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KCUE에서 요청한 ‘大學(校)自體分析 研究報告書’ 書式을 작성하는 과정이나 KCUE에서 파견한 평가 위원들의 現地訪問評價 과정중에 해당 대학에서 어떤 態度나 姿勢로 임하느냐는 어떤 점에서는 평가의 目標設定段階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서면 보고서 작성시든지 현지 방문 평가에 임하는 경우든지 形式的으로 보고하라니까 報告書를 해당 極職教授와 事務職員 몇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든가, 現地訪問評價委員들이 방문한다니까 관련 보직 교수나 사무 직원이 質問

에 答을 하거나 요청하는 資料를 提供하면 소위 ‘評價’가 終了된 것으로 KCUE의 大學評價事業을 받아들인다면, 大學教育의 質的 水準向上이나 대학의 自主性 및 公共性의 提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요원하다.

한편 KCUE의 입장에서 볼 때 評價事業은 法定義務事業이므로 週期의으로 평가 사업을 해야겠고 평가의 결과는 지체없이 文教部長官에게 보고하라는 法的 義務가 있으므로 可及의 빠른 시일내에 評價報告書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나면 ‘評價業務’는 일단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평가 사업의 제도적 정착화가 自律的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sup>13)</sup>

때문에,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前節에서 논의한 대로 평가의 과정중에서도 參加校들의 恵澤을 얻을 수 있도록 면밀한 事前準備가 요청된다. 목표 설정의 경우에서와 같이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도 評價對象校의 教授 및 職員代表들이 評價委員, KCUE의 專門委員들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평가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들을 협의・연구・조정하는 事前段階가先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大學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는 ‘自體分析研究報告書’ 문항들도 再檢討를 요한다. 즉 문항들의 目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학의 학사 행정이나 운영 전반에 걸친 實態 파악에 목적이 있다면 실태 파악은 왜 해야 하는지 혹은 그러한 문항들을 가지고 타대학과 比較하는 데 필요한 情報를 입수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지 등 문항들의 목적이나 필요성의 確認이 필요하다. 前節에서 언급한 대로 막대한 재정 투입 없이는 수용할 수 없는 評價結果를導出하기 위한 間項들은 再考를 要한다. 평가의 대상과 목표를 特定한 학과나 분야에 限定시켜 평가를 받는 大學(校)들로 하여금 그 평가의 결과를 自進하여 수용하고 자율적으로 試行토록 평가 사업을 再定立하는 것이 評價制度의 定着化에 더 實效가 있다면 그에 걸맞게 ‘自體分析研

13) 康宇哲, 前揭書, p. 40.

究報告書'의 문항들도 調整해야 할 것이다.

평가의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看過해서는 안 될 要件이 있다. 즉, 全校的인 參與를 축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當該校의 總·學長이나 私立大인 경우에는 財團理事會에서부터 KCUE에서 실시하는 평가 사업의 목적과 그 중요성을 충분히 認識하고 평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처럼 KCUE에 제출하는 报告書에 決裁捺印하는 것으로 혹은 現地訪問評價委員들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간 뒤 보고를 받는 정도로 大學行政責任者들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한 평가를 全校的인 自體發展의 契機로 정착시킬 수 없다.

평가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終結의 全過程에 걸쳐 대학의 행정 책임자가 自己大學(校)의 평가를 위한 自體分析研究에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自體改革의突破口를 마련하겠다는 決意를 표명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평가 사업도 形式的인 要式行爲로 끝날 확률이 압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自體評價를 위한 分析과 研究過程에서 현재와 같이 보직 교수나 사무 직원의手中에서 报告書가 완성·제출되고 당해 연도의 평가 사업을 끝내는 形式化를 防止하는 것이 全面的인 改革을 목표로 하는 평가이든, 學科別單位의 평가이든 그 평가 자체를 정착시키는 데 基本的인 要件이 된다. 内的인 評價 自體의 정착 없이 外部에 의한 평가를 自律的으로 受容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 자체내에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평가의 대상이나 목표가 限定的이고, 해당 학과나 분야의 교수나 직원 혹은 학생들의 關心度가 높은 사항에 관하여 평가 작업을 集中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대로 평가의 과정이나 결과가 자기들의 학과나 해당 부서의 利益 또는 恵澤과 直接的으로 관련될 때에 높은 自發的 參與度를 기대할 수 있다.

評價의 方法이나 節次에 관련된 이상의 몇 가지 점만이라도 實效性 있는 방향으로改善해 간다면 여타의 방법이나 절차, 문제점들에 대한 解決의 실마리도 쉽게 찾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 5. 맷는 말

大學의 評價事業은 그目的이 누누이 언급한 대로 대학교육의 質的 水準의 向上과 대학의 自主性 및 公共性의 提高에 기여하는 데 있기 때문에 制度로서 定着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社會經濟構造를 高度技術情報社會으로 발전시켜 가야 할 國家의 目標達成에 있어서 대학이 담당해야 할役割을 特定한 基準에 의하여 週期的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改善策을 모색한다는 것은 國家的 次元에서 요청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KCUE에 의한 대학의 평가 사업이 선진국에서와 같이 自生的으로 혹은 정부의 補助金支給을 위한 法定事業으로 정착되고 발전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하에서 自律的인 制度로서의 대학 평가 사업의 定着을 즉각적으로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물론 현재 文教部가 관장하고 있는 대학의 新規設置許可, 종합대학으로의 升格, 增員, 增科 등 大學行政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基本的 情報나 根據資料를 KCUE의 대학 평가 사업의 결과에 의존하도록 法的 根據를 KCUE에 부여한다면 현재의 대학 평가 사업을 조속히 제도로서 定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그렇게 정착이 되더라도 大學間의 균형적 발전이나 質的 改善에 즉각 반영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갖가지 副作用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무런 외부적인 평가 없이도 大學別 自體의 評價에 의하여 작성된 自體發展計劃에 정부가 行·財政의 支援만 해준다면, 현재의 水準보다는 훨씬 質 높은 教育을 실시할 수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러한 假定보다는 현실의 여건하에서 KCUE에 의한 大學評價事業을 大學間의 自律的協議와 研究 및 調整의 方法으로써 定着化를 모색하고 그 방향으로 實施해 간다면 그 과정에서 KCUE에 의한 평가 사업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漸增受容하는 發展的 變化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그러한 漸增的 受容過程에서 評價의 基準도 점진적으로 大學敎育의 水準을 절적으로 社會·經

濟的 要請에 걸맞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上向調整할 수 있을 것이고, 평가 작업을 客觀的으로 適實性 있게 수행할 수 있는 評價專門家의 양성과 확보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KCUE의 평가 작업은 制度的 基盤을 구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美國의 大學業績評定制度나 英國의 大學補助金委員會制度와 같

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KCUE의 自律的 位置가 대학 사회에 의하여 認定되리라고 본다. 한편 그러한 방향으로 KCUE의 평가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政府가 KCUE의 機能을 漸增的으로 強化해 간다면 그 만큼 KCUE에 의한 自律의 評價制度의 定着化도 加速화될 것이다. \*

### 〈教育箴言〉

군자는 아둔한 사람이 배움에 이르기가 어렵고, 이에 비해 총명한 사람은 배움에 이르기가 쉽다는 점을 인식하여, 배우는 사람의 자질이 뛰어난지 아니면 열등한지를 알 후에야, 그들을 잘 깨우쳐 줄 수 있다. 그들을 잘 깨우쳐 줄 수 있는 다음에야 스승이 될 수 있다. 스승이 될 수 있는 다음에야 일개 관청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으며, 관청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은 다음에야 일국의 임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승이라는 것은 배움으로써 임금이 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스승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君子知至學之難易而知其美惡然後 能博喻 能博喻然後  
能爲師 能爲師然後 能爲長 能爲長然後 能爲君 故師者  
也所以學爲君也 是故擇師 不可不慎也.”

〈禮記, 學記篇〉